



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의 겸직 등 금지 규정 신설〉

■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237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황 승 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인영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12. 5.
3. 회 부 일 : 2024. 12. 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금지만을 규정하고 겸직 금지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여 위원의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업체의 임원 등에 대한 겸직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63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은 재직 중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원,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임원의 직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63조의2(겸직 등의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 2.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3.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의 임원

- 현행법 제57조제1항¹⁾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하도록 하면서, 위원의 임기(제61조), 신분보장(제62조), 정치운동의 금지(제63조) 및 제척·기피·회피(제67조) 등 권리와 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1)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 개정안은 위원에 대한 겸직 등의 금지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해충돌 가능성을 줄이고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기하려는 취지임.

□ 현행법 제57조제3항²⁾에 따라 이미 국가공무원 신분인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³⁾, 「국회법」 제29조⁴⁾, 「지방자치법」 제43조⁵⁾에 따라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개정안에 따라 새롭게 겸직 등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은 4명의 비상임위원임.

□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현행법 제67조⁶⁾에서 이해충돌

-
- 2) 제57조(공정거래위원회의 구성 등)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밖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보(補)한다.
- 3)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 4)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 5) 제43조(겸직 등 금지)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
3.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정당법」 제22조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은 제외한다)
- 6)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사건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건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사건
 4.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사건
 5.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사건
 6.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사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不作爲)에 관여한 사건
 7. 자기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사건의 조사 또는 심사를 한 사건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이미 위원에게 제척·기피·회피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⁷⁾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제5조)와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제14조),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21조) 및 부당이득의 몰수(제22조) 등 충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는 점, 비상임위원의 경우 자신의 본업을 유지한 전문가를 통해 외부의 시각을 반영하려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반대하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먼저, 현행법상 제척 제도는 그 대상사건을 열거하고 있는 반면, 개정안의 겸직 등의 금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의 임원으로서 그 대상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현행 제척 제도가 특정 사건에 대해서만 직무집행을 배제하여 간접적 또는 사실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까지 모두 규율하기는 어려운바 위원들의 직무상 이해충돌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반영한 취지로 보임.
- 다음으로, 기피·회피는 당사자의 신청과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 스스로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법률 규정만으로 회사의 임원

7)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8건의 전원회의에서 총 78건의 제척(상임위원 41건, 비상임위원 2건) 및 회피(상임위원 7건, 비상임위원 28건)이 있었음.

이나 영리 목적의 사업 영위가 당연히 배제되는 개정안과는 그 성격이 다르고,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나 부당이득의 몰수와 같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후적 규제라는 점에서 개정안과 차이가 있음.

- 마지막으로 다른 위원회의 사례임. 개정안과 유사한 겸직 등 금지를 두고 있는 개인정보위원회를 비롯하여 다수의 위원회가 겸직금지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비상임위원에 대한 겸직금지는 다양한 양태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한편,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의 비상임위원에 대하여 기업의 사외이사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⁸⁾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심사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8) 이인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2)

<겸직 등의 금지 비교>

위원회	겸직 등 금지
방송통신위원회	공무 외 영리목적 업무 금지 ※ 전원 상임위원으로 구성
공정거래위원회	없음
금융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감독 대상 단체의 임직원, 그밖에 보수를 받는 직 ※ 단,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장 추천 금융전문가 위원 2명에게만 적용하고 비상임위원(경제계 대표 1명)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위원회와 동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 심의·의결과 관련된 업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사항과 관련된 업무, 영리업무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행정기관등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인권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직(예: 법인·단체 등의 고문·임원 또는 직원, 상업·공업·금융업 등 영리업무의 경영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공무 외 영리목적 업무 금지 ※ 상임위원에게만 적용

문 의 처

02)6788-5109